

대전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1나112275 판결 [구상금 내지 부당이득반환 채권 청구]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한별 담당변호사 오지영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규

변 론 종 결 2021. 11. 16.

판 결 선 고 2021. 12. 21.

제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5. 26. 선고 2019가단12165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471,89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893,45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으로 ① 관련 제1사건 소송비용 등 76,025,990원1), ② 관련 제1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 22,000,000원, ③ 관련 제2사건 소송비용 등 12,578,440원, 합계 110,604,430원 중 110,471,89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34,578,440원(= ② 관련 제1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 22,000,000원 + ③ 관련 제2사건 소송비용 등 12,578,4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의 원고 청구인용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① 청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다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원고의 청구에 관한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판단

원고는, 관련 제1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가진 자로서 이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나, 망

G로부터 관련 제1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1/2 지분을 명의신탁받은 명의수탁자인 C이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태도를 보여 이를 C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C이 관련 제1사건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의 부탁으로 위 소송에 응소하여 다투게 되었다. 관련 제1사건 소송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피고로서 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수임한 변호사와 소송 진행사항을 상세히 공유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담당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한 것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1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645,000,000원을 지급받고도 피고에게 그 중 5,000만 원만 지급하였다가 2,800만 원을 돌려받은 경위는 피고가 관련 제1사건 소송에서 비용 등으로 사용하라고 반환하면서 소송비용을 보전하여 줄 것을 약속하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소송에 응소하여 다투어 달라고 부탁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려는 의사를 번복하여 제1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과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가 제1사건 소송의 실질적인 당사자라거나 위 소송에서 응소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피고가 원고에게 응소를 부탁하면서 소송비용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특히 원고와 C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는 C에 대하여 제1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제1사건 소송은 실질적으로도 원고를 그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관련 제1사건 소송비용 등의 합계액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태영, 판사 김윤종, 판사 윤현정

1) 관련 제1사건 패소로 원고가 C에게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57,254,795원인데 원고가

57,122,261원을 구하고 있는바, 제1심판결은 이를 선해하여 57,254,795원이라고 보고, 관련 제1사건 소송비용 등 합계를 75,893,456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에서 원고가 구하는 액수)이 아닌 76,025,990원으로 산정하였다.